

Newszine

A Quarterly Update of Legal Developments in Korea

September 2016, Issue 3

UPDATES 법률정보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강화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 제정

등급분류 제도 개선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CASES 업무사례

- CJ CGV 및 그 컨소시엄의 터키 마르스 엔터테인먼트그룹 인수
- MBK 파트너스의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부문 매수
- 두산, IMM, 미래에셋 PE의 DST 매각
- 라파즈홀심 그룹의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 매각
-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 과세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
- 이시스 제81호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종로타워 매입
- 네덜란드 복합 자산 투자 거래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평가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 적격분할요건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한 고등법원 판결
- 해외에 지급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실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건 심의절차종료
- 은행 리보금리 담합 건 심의절차종료
- 중국 광대은행의 서울지점 설립
- 웨이잉과 텐센트의 와이즈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취득
-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 현지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관련 주관사 자문
- 턴키공사에서 불측의 실험결과를 이유로 공기연장을 인정받은 중재판정

NEWS 새소식

수상소식

글로벌 로펌 49위, 아시아 로펌 8위로 선정 - The Lawyer (2016년 6월호)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순위 4위 선정 -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6

에너지-인프라 분야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Energy and Infrastructure 2016



사무소 동정

김·장 국제법 연구소 설립

조세실무연구7 발간

2016 IFA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 참여

금융조세포럼 세미나 발표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태평양 중재그룹 Training Day

세무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

백우현 회계사(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bmjung@kimchang.com)
송형우 회계사(hyungwoo.song@kimchang.com)

2016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 신설

내국법인은 10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당기 사업연도까지 이월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아무리 이월된 결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 개정 규정은,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의 경우 2016년 법인세 신고 시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위 법인세법 개정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 등)에는 적용되지 않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내국법인의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 받는 것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법인과 동일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을 적용 받게 됩니다.

2.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을 방지하기 위한 OECD 및 G20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다국적 기업의 해외 관계회사와의 국제 거래에 관한 정보제출 의무화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난 해 입법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내용에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CbC”)를 추가하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전년도 연결재무재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은 현지 관계회사들의 해외현지 납부 세금을 비롯한 사업 활동(예를 들어, 수익, 이익, 직원수, 자산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국가별보고서를 모회사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환경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규제강화

이윤정 변호사(yjlee@kimchang.com)

전인환 변호사(inhwan.jun@kimchang.com)

최근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각 기업에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공기청정기, 에어컨 필터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도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외부 유출과 관련된 위해성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위해우려제품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1) 유해물질의 함량기준 및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2) 규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개정을 추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이 신설되었으며, 각종 조사·보고 제도 등을 통해 환경부 등 감독기관이 기업의 화학물질 취급 관련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화학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과 더불어, 기업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확인명세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등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법 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 제정

양영준 변호사(yjyang@kimchang.com)
장덕순 변호사(ducksoon.chang@kimchang.com)
엄승찬 변호사(seungchan.eom@kimchang.com)

특허법원은 2016년 3월 16일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심리 매뉴얼”)을 제정·공표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특허·상표·디자인·품종보호권(“특허 등”) 관련 침해사건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침해소송 항소심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리 매뉴얼은 침해소송 항소심 사건에서의 절차 협의, 주장·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 변론절차의 진행 방법과, 증거신청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 매뉴얼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의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 상당하는 절차 마련

심리 매뉴얼은 다수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Case Management Conference에 상당하는 ‘사건관리 화상회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법원이 소송당사자들과 영상·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변론기일의 일자 및 횟수, 각 기일별 변론 쟁점, (2)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 (3)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여부 및 기한, (4)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 실시 여부, (5) 조정절차 회부 여부, (6) 쟁점 확인 및 정리와 같은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는 법원이 미국의 Scheduling Order에 유사한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리 매뉴얼에서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나 불이익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특허법원의 구체적인 실무 운영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쟁점별 변론기일 운영 가능

심리 매뉴얼은 (1) 수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거나 쟁점이 여러 개여서 청구항 그리고 쟁점별로 집중 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청구항 해석이 다투어지고 그 해석에 따라 나머지 쟁점에 대한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항 해석에 대한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 (3) 기타 쟁점별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소송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변론기일을 쟁점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Markman Hearing과 같은 청구항 해석만을 위한 변론기일의 운영도 가능해졌습니다.

3. 전문가증인 관련 구체적인 절차 마련

심리 매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문가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심리 매뉴얼은 (1) 전문가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2) 전문가증인의 신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 즉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한, 증인신문시간의 제한,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 등에 대해 법원이 준비명령을 할 수 있고, (3)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증인에 대한 상세한 절차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증인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 이유 제시

심리 매뉴얼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이나 새롭게 신청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주장 및 증거를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시 이유를 밝히도록 함으로써 1심에서의 충실한 주장·증거 제출이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등급분류 제도 개선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최동식 변호사(dschoi@kimchang.com)
이현규 변호사(hyunkyu.lee1@kimchang.com)

IPTV, 가상현실기기(VR) 등 기존의 분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2015년 11월 6일 국회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법률은 2016년 5월 29일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입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게임물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면 직접 개발한 게임, 퍼블리싱을 하는 게임, 그리고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단,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행성의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제외). 공공기관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원칙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위 개정안은 온전한 민간등급분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고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법률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마련한 대신, 현재 예외적으로 인정된 온라인 오픈마켓 등의 자율 등급분류 권한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2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은 별도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자율 등급분류를 통하여 게임물을 유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률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나 일부 기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예상되므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온라인 오픈마켓 등 사업자의 경우 기준 마련과 관련한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마련될 세부 기준을 면밀하게 등을 검토하여 경과기간 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현행 게임산업법상 국내에 사업의 기반이 없는 해외법인이 제작한 해외게임물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없어서, 국내 이용자가 해외게임물을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이용하게 되면, 해외법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게임산업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해외게임물(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제외)에 대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에 사업 기반이 없는 해외법인도 해외게임물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해외 게임 제작사의 경우 이와 같은 개정법률에 의하여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송선현 변호사(shsong@kimchang.com)
윤태한 변호사(thyoon@kimchang.com)
안수빈 변호사(soobin.ahn@kimchang.com)

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 27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역외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한 것이 국내 자산운용 관련 규제의 큰 변화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시행된다면 외국 펀드매니저들이 한국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1월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투자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정부, 특정 연기금, 금융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고 비금융기관인 일반 법인과 자본을 갖춘 개인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외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가 국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범위보다 좁게 설정됨에 따라, 역외 펀드매니저들의 투자자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과 자본을 갖춘 개인(충분한 투자경험을 갖추고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개인)에게 적절한 상품을 판매하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이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은 역외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를 기존 적격 전문투자자자에 추가하여 다음의 투자자도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일반법인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일반법인
- 전문투자자인 일반법인(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원 & 외부감사 대상법인)
- 전문투자자인 개인(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 총자산 10억 원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이상환 변호사(shlee@kimchang.com)
송근철 변호사(keunchul.song@kimchang.com)

금융위원회는 2016년 6월 28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권한 및 과징금 부과 한도를 확대하였으며, 금융소비자의 손해액 추정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법률안에 비하여 규제 수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등 계약 철회권 및 위법한 판매행위로서 체결된 계약의 해지권 도입

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타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및 판매의 대리·중개를 영업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체결한 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설명의무위반, 부당권유, 불공정영업행위 등 위법한 판매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방안 확대

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시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사본교부권, 열람권,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금융회사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관하여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일부 전환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재 확대

제정안은 현행 개별 금융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금융상품 판매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의 제재 수준도 상향하였습니다. 대출성 상품 판매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고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사항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유형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구매권유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의무 확대

제정안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유형별로 그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금융상품의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상품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보수 등의 대가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산재하고 있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통합하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동일 기능의 상품에 대하여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체계 변경

제정안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그 실질적 기능에 따라 예금성 상품(예금 등 원금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원금비보장성 상품), 보장성 상품(장기간 보험료 납입 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 대출성 상품(금융회사의 대출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각 상품별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금융회사의 판매와 관련된 규제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일반

CJ CGV 및 그 컨소시엄의 터키 마르스 엔터테인먼트그룹 인수

CJ CGV를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여 세계 영화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모펀드투자전문회사인 악테라 그룹 및 그 창업주가 소유하는 터키 최대 영화 상영 그룹인 마르스 엔터테인먼트그룹의 기발행주식 100%를 약 7,900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한국 시장을 선도하는 영화 상영 그룹인 CJ CGV가 터키 시장을 선도하는 영화 상영 그룹인 마르스 시네마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자금조달 구조 수립 및 보장보험 가입에 있어 여러 준거법에 따른 면밀한 법률분석 및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CJ CGV를 대리하여 본건 거래를 위한 자금조달구조 수립을 자문하였으며, 해외의 다른 자문사와 함께 법률 실사, 계약서 작성 및 협상, 보장보험 협상 및 가입, 합병 승인 및 거래종결 등의 법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MBK 파트너스의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부문 매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자사의 공작기계 사업부문을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두산공작기계 주식회사에 1조 1,30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영업양수도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각종 자산 및 인허가 등을 승계함에 있어 면밀한 법률분석 및 자문이 필요하였고, 중국, 유럽 및 미국에 위치한 3개 해외법인들의 주식양수도 및 인도법인의 영업양수도가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각 현지 자문사들과 함께 현지법률을 고려한 자문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 있어 김·장 법률사무소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와 두산공작기계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본건 거래를 위한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계약서 작성 및 협상, 거래종결 등의 거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본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산, IMM, 미래에셋 PE의 DST 매각

두산그룹의 계열회사인 디아이피홀딩스 주식회사와 재무적 투자자들이 설립한 오딘홀딩스 유한회사는 2016년 5월 31일 두산디에스티 주식회사(현재 한화디펜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주식 100%를 한화테크윈 주식회사에 약 6,55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방위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거래로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업종의 특성상 관계 정부기관으로부터 거래에 관한 인허가를 적시에 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법률분석 및 자문이 요구되었으며, 매도인들이 각자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서 가지는 주식매각의 목적 및 관심사를 조화롭게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했습니다.

본건 거래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디아이피홀딩스 주식회사와 오딘홀딩스 유한회사를 모두 대리하여, 본건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 협상, 필요한 제반 신고·보고,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라파즈홀심 그룹의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 매각

글로벌 시멘트회사인 라파즈홀심 그룹은 2016년 4월 29일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회사의 주식 99.7%를 사모펀드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와 베어링PEA의 컨소시엄에 약 5,60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라파즈홀심 그룹을 대리하여 본건 거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hare Purchase Agreement), 이 전서비스계약(Transition Services Agreement) 등 필요한 계약들을 준비하고 체결하는 등 계약서 작성, 협상, 필요한 제반 신고·보고, 거래종결, 그리고 본건 거래에 따른 세무상 이슈까지 종합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본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KB금융지주는 2016년 5월 3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현대증권의 지분 22.56%를 1조 2,500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매도인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대증권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거래였으므로, 촉박한 일정 내에 거래를 종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 측에서는 통상적인 실사과정에 더하여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여야 했으며, 현대증권이 활동하는 여러 국가의 감독당국 규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의 M&A에 대한 광범위한 자문경험에 기초하여, KB금융지주를 대리하여 매도인이 요청한 촉박한 기한 내에 본건의 복잡한 거래구조의 모든 측면을 망라하는 실사, 계약 관련 서류 작성 및 협상,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거래가 관련 국가의 법적 요건 및 감독당국의 요구 사항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문함으로써 KB금융지주가 적기에 성공적으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국세청 훈령인 과세전적부심사 처리규정에서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처분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과세관청이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 원칙에 입각하여,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납세자를 상고심에서 처음 대리하여 행정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미, 최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보호를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 경향 등을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분석·제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송

과세처분의 절차적 요건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16년 4월 15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부동산

이지스 제81호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종로타워 매입

외국계 펀드가 투자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이지스 제81호 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는, 2016년 3월 9일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영보 합명회사로부터 각각 서울 시 종로구 소재 집합건물인 종로타워를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6년 3월 31일 및 4월 1일 각각 매입거래 종결과 함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매매 및 임대차를 위한 법률실사,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및 대출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일련의 거래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특히 2인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전부 취득 및 임대차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거래 완수에 기여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복합 자산 투자 거래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교직원공제회 등이 투자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룩셈부르크의 Société en Commandite Simple를 통해 룩셈부르크 소재 IMMO INVEST LUX HOLDCO A S.à.r.l (“PropCo”)의 지분 70%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소재한 오피스, 호텔, 리테일 및 주차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 건물을 취득하는 투자를 실행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PropCo의 나머지 지분 30%를 취득한 프랑스의 상장펀드인 OPCIMMO가 설립한 SPC와의 합작투자 계약서, 대상 부동산의 실사보고서 및 매매계약서의 검토, 협상과 체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한편, 합작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원활한 자금의 조달 및 거래 진행을 위한 적절한 거래 구조 및 거래 조건을 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본건 거래의 성공적인 완수에 기여하였습니다.

관세 및 국제통상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평가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제약회사가 수입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평가 쟁점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그 후 시판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이므로 시판허가를 받은 상용 의약품의 수입신고 가격으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세관의 논리를 대법원은 “사용목적 및 외관뿐 아니라 그 상업적 가치, 안전성 및 약효의 검증 여부, 소비자의 평판 등 여러 면에서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관하여 시판허가를 받은 상용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 및 획득할 수 있는 원가분석 자료 등을 기초로 수출자의 이윤 및 판매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적절한 조정을 하는 등 관세법 제35조가 규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의 판단을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시켰습니다.

우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평가 쟁점에 관하여 사법 시스템이 정비된 국가의 최고 법원이 내린 거의 최초의 판결로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평가 쟁점에 대한 중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큼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관세팀, 행정소송팀, 제약팀의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약산업에서의 가격 결정의 특수성과 제약 분야 R&D의 특수성에 대해 연구, 분석하고 해외 사례도 광범위하게 연구, 분석하여 과세관청 논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세무

적격분할요건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한 고등법원 판결

인천광역시 측은 내국법인 갑이 2008년에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것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분할신설법인에게 과세하였고,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위 분할이 적격분할이 아니라고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갑회사에게 과세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갑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을 대리하여 과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행정법원(법인세 사건), 인천지방법원(지방세 사건)으로부터 모두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항소하였으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모두 납세자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에 관한 여러 중요한 쟁점들이 다루어졌고,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과세관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분할대상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분할법인의 특정 사업부문 전체가 아닌 특정 사업장을 분할하더라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과세이연)의 취지에 비추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 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산이 승계되었다면 포괄적 승계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승계 받은 자산의 1/2 이상 직접 사용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제조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면서 상당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도시개발법 상 토지소유자의 지위에서 외부용역회사들을 통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수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면, 승계 받은 자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과세된 이번 사건은 국내 조세소송 사상 단일 쟁점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사건으로서, 적격분할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판단하는 등 향후 기업구조재편 실무에서 참고할 선례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급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외국법인과와의 합작회사인 한국법인은 과거에 50% 주주인 영국법인(지주회사)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는 영국법인이 아니라, 그 최종 모회사인 프랑스 법인이라고 보고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만큼을 과세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당해 한국법인을 대리하여 과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고등법원에 환송하는 납세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법원은, 영국법인의 설립 경위와 사업활동 내역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영국법인은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귀속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실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28일 최고급 명품인 에르메스 버킨백, 캘리백의 디자인을 폴리에스터 소재 천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착시 효과를 일으켜 입체적으로 보이게 제조한 가짜 가방인 이른바 ‘프린트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을 위반하는 부정경쟁행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2012671 판결). 법원은 위 판결에서 2013년 7월 30일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실시 하였습니다.

원고 에르메스의 버킨백, 캘리백은 보통 1,000만 원대에서부터 1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가방으로 소량만 생산되기 때문에 구입을 위해서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1~3년을 기다려야 하는 제품입니다. 피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촬영한 후 이를 폴리에스터 소재의 천에 입체(3D) 포토프린팅(photo-printing) 기법으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프린트백’ 제품을 생산하여, 백화점, 면세점, 인터넷 쇼핑몰

물 등을 통해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프린트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인 버킨백 또는 캘리백의 형태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프린트백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폐기 및 1억 5,000만 원(재산상 손해 1억 원 +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한 무형적 손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프린트백 생산·판매 행위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지의 저명성’ 및 ‘혼동가능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프린트백의 경우에는 평면적으로 프린트 되어 있고 폴리에스터 천 소재이므로 버킨백, 캘리백과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가)목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2013년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신설된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차)목의 적용범위를 다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의 관계에서 명확히 실시하였습니다.

원고 제품 (버킨 백)	피고 제품 (버킨 백을 프린트한 형태)	
	전면부 형태	접은 형태
		

즉,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보호의 대상이 권리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해야 하고, (2) 침해된 권리자의 이익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제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전체 법체계에 비추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며, (3) 침해자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즉, 보호의 대상이 되는 권리자의 성과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는 해당하나 법적 보호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통상적으로는 금전 배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제품이 ‘최고급 가죽’, ‘장인정신’ 등으로 대표되고 있고 이러한 고급 이미지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광고비가 지출되고 있으나, 피고의 프린트백은 18~20만 원 정도에 판매되어 장바구니, 기저귀 가방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 1억 원과 별도로, 원고의 명성·신용 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5,000만 원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공정거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건 심의절차종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7월 5일 지난 4년 이상 조사를 진행해온 6개 시중은행에 대한 CD금리 담합 건에서 심의절차종료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의절차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범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 의결하는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여러 은행을 대리하면서, 은행 간의 공동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가 불분명하고, 4년 동안의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CD 금리 변동 추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근거한 것임을 논증하여 공정위로부터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외형상 일치와 상당한 개연성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심의절차종료 의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은행 리보금리 담합 건 심의절차종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7월 5일 최근 3년 간 진행해온, 외국 은행의 외국환 트레이더들의 리보 금리 담합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 조사 건에서 심의절차종료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의절차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결하는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여러 외국 은행을 대리하면서, 우리 공정거래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과, 본 건의 경우 (1) 해외에서 국내 시장을 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 (2) 해외에서 트레이더 간 담합이 문제된 상품들에 관해 국내 소재 트레이더들의 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외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가 국내 시장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상당하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위는 본건에 대한 조사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국외에서의 리보 금리 담합 행위가 국내 시장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상당하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및 이에 따른 심의절차종료 의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중국

중국 광대은행의 서울지점 설립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China Everbright Bank Co., Ltd. Seoul Branch)은 지난 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본 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는 중국 및 홍콩 지역에서 주로 중소기업에 특화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주식제 상업은행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9개월이라는 유례 없는 단기간 내에, 본건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서울지점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및 본인가 취득을 비롯하여, 서울지점의 개업에 필요한 제반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웨이와 텐센트의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취득

중국의 온라인 모바일 티케팅 1위 업체인 웨이는 중국 최대규모 IT기업인 텐센트와 함께 2016년 5월 27일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인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의 신주 및 구주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발행 신주 953,676주를 약 419억 원에 인수하고, 양현석 최대주주, 양민석 대표이사 보유 구주 519,699주를 약 228억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웨이, 텐센트와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사업에 대한 전략적 협력 관계 형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거래로서, 웨이가 한국에 최초 투자한 건이었으며, 상장회사의 지분 취득 거래에 관한 법적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웨이를 대리하여 거래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거래종결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대한민국 정부의 중국 현지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관련 주관사 자문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12월 15일 중국 내에서 외국 정부로서는 세계 최초로 30억 위안 한도의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sovereign PANDA bond)을 발행하였습니다.

본건은 우리 정부 최초의 위안화 표시 외평채 발행인 동시에 중국 최초의 외국 정부에 의한 채권 발행입니다. 중국 내에서 외국 정부가 위안화 채권을 발행한 사례가 없어 이를 위한 규정과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중국 감독기관들(PBOC 및 NAFMII)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규정 및 절차상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발행을 계기로 규정 및 절차상의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주관사를 대리하여, 사적인 경제주체와 성격이 다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기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평채 발행을 위한 제반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쟁

턴키공사에서 불측의 실험결과를 이유로 공기연장을 인정받은 중재판정

턴키공사에서 시공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공기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도 발주자는 턴키공사임을 내세워 이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상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가 구제 받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시공자가 구제된 중재판정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S시는 턴키방식으로 ‘OO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에 대한 입찰(“본건 입찰”) 공고를 하였습니다. 본건 입찰안내서는 ‘입찰자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입부, 본선터널구간, 유출부의 원활한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모델링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설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실시설계기간에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여 흐름 등 시설물의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컨소시엄은 수치모델링을 통해 기본설계를 하고 본건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컨소시엄은 실시설계를 위한 수리모형실험에서 수치모델링과는 다른 실험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기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컨소시엄은 S시에 공기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S시는 본건은 턴키방식의 계약이므로 불측의 수리모형실험결과로 인한 공기 연장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의뢰인 컨소시엄과 S시는 중재를 통하여 본건 공기연장 분쟁을 해결하기로 중재합의를 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중재에서 의뢰인 컨소시엄이 수행한 수치모델링 및 수리모형실험의 적절성, 수리모형실험결과가 예측 외로 수치모델링 결과와 다르게 나온 것은 의뢰인 컨소시엄의 귀책이 아니라는 점, 본건 공사가 턴키공사라 하더라도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기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용인해야 하는 점 등을 여러 측면에서 주장하여 14개월의 공기연장이 허용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여 12개월의 공기를 연장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중재판정은 “비록 설계시공일괄계약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설계기간이나 시공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게 된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마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실시설계기간의 연장이나 본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주기관의 책임에 기한 것이거나 그밖에 시공자에게 책임 없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면 상당한 범위 내의 시공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턴키공사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가 허용된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수상소식

글로벌 로펌 49위, 아시아 로펌 8위로 선정 - The Lawyer (2016년 6월호)

김·장 법률사무소가 영국 법률 전문 매거진 The Lawyer가 2016년 6월호에서 발표한 'Global 200' 특집에서, 49위에 선정 되었습니다. 'Global 200'은 The Lawyer가 올해 첫 기획하는 랭킹 특집으로, 전세계 로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 독자적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200개의 로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50위 안에 랭크 되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호에서 발표한 'Asia Pacific 150' 에서 우리 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규모 기준, 8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Asia Pacific 150'은 The Lawyer가 매년 발행하는 랭킹 특집으로,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로펌 대상 설문조사, 인터뷰 등 독자적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상위 100개 로컬 로펌, 상위 50개의 글로벌 로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로펌 순위 4위 선정 -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영국법률시장 조사기관 Acritas가 발표한 'Asia Pacific Law Firm Brand Index 2016'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상위 10개 로펌 순위에서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계 각국에 오피스를 두고 업무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을 제외한 지역 로펌 중에서 1위를 기록하였고, 3년 연속 국내 로펌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순위는 아태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아태 지역 관련 법률 서비스 사용자 총 600여명을 대상으로 로펌의 인지도, 선호도, 기업합병과 다국적 거래 소송의 수행능력 등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10개 로펌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에너지·인프라 분야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IFLR1000 Energy and Infrastructure 2016

김·장 법률사무소가 'IFLR1000 Energy and Infrastructure' 2016년판에서 에너지/인프라 분야 한국 선두 로펌(Tier 1)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허익렬, 조영균 변호사, 신창희 미국변호사가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IFLR1000 Energy and Infrastructure'는 금융 전문 글로벌 미디어그룹 Euromoney 계열의 출판사인 Legal Media Group이 발행하는 Energy & Infrastructure 분야 국가별 로펌 및 변호사 랭킹 가이드북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에너지·자원 전문그룹은 에너지·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통하여 쌓인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하여 금융, 인수·합병, 분쟁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동정

김·장 국제법 연구소 설립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6년 5월, 국제법과 국제소송 사례 연구 기관인 '김·장 국제법 연구소'를 출범하였습니다.

초대 소장은 전 UN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을 역임한 권오곤 변호사입니다. 권 소장은 사법연수원 9기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고, 2001년 한국인 최초로 ICTY 국제재판관에 선출되어 10여년간 ICTY 상임재판관과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국내 및 국제법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장 국제법 연구소는 국제 사법체계 및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국제소송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활동을 조력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조세실무연구7 발간

김·장 법률사무소의 세무조사 및 조세쟁송 전문그룹이 최신 조세실무 이슈에 대한 논문과 판례평석 26편을 엮어 '조세실무연구7'을 출간하였습니다.

조세실무연구는 2009년부터 연간 발간하고 있는 연구논문집으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들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분석을 담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조세 업무는 Chambers Asia-Pacific, World Tax 등 세계적인 미디어에서 꾸준히 선두 로펌(Tier 1)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2016 IFA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 참여

김·장 법률사무소 박윤준 고문, 여동준 회계사, 백제흠 변호사가 5월 12일~13일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IFA Korea 주최로 진행된 '2016 IFA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에 사회자 및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Implementation of BEPS in Asia-Pacific Region'을 주제로, 각국의 BEPS Project 이행 방향과 OECD 주요 정책담당자 및 각국 전문가의 견해를 공유하고, 국내외 기업 국제조세 제도와 환경을 둘러싼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Implementation of BEPS: South East/North East Asia'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저희 사무소의 박 고문과 여 회계사가 각각 사회자 및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백 변호사는 'Round Table for Korean corporate officers' 주제의 사후 세션에 패널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금융조세포럼 세미나 발표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은집 미국변호사가 '금융조세포럼 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6월 14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저희 사무소의 김 변호사는 '사모펀드 규제체계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규제하되 펀드 자체는 직접 규제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기존 공모펀드를 전제로 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사모펀드에만 초점을 맞춘 맞춤형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증권규제, 자산운용, 사모투자, 자본시장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을 자문하고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금융·조세 이슈 연구 모임인 금융조세포럼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태평양 중재그룹 Training Day

김·장 법률사무소의 정교화 변호사가 '아시아·태평양 중재그룹 Training Day'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번 Training Day는, 세계변호사협회 아시아·태평양 중재그룹(ABA Asia Pacific Arbitration Group)의 주최 하에 'Best Practic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저명한 중재인들과 변호사들이 참석하였고, 저희 사무소의 정교화 변호사가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Korea'를 주제로 국내외 말레이시아의 중재판정 집행의 차이에 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IBA 아시아 태평양 중재그룹은 IBA 내 지역 포럼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포럼과 전문 위원회인 중재위원회가 아시아 중재발전을 위해 합작 형식으로 설립된 그룹입니다.

Newszine